



보도자료

사무총장 채 명 성 변호사

연락처 : 02-599-4434

010-9077-6759(김태훈)

홈페이지: www.hanbyun.kr

북한인권법의 연내 처리를 무산시킨 국회를 규탄하며, 헌재에 조속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의견서를 제출

1. 국회의 북한인권법의 연내 처리 무산

- 국회는 북한인권법의 통과를 10년째 끌어오다 지난 24일 외교통일위원회는 19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북한인권법을 논의했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해 이번에도 연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됨.

2. 국회를 규탄하며 헌재에 위헌확인 촉구 의견서 제출

- 이에 “한변”은 국회를 규탄하며 오늘 29일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 입법 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2013헌마266)에 그 확인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함.
- “한변”은 2013. 4. 25. 위 헌법소원을 제출하여 어언 2년이 돼 가는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님. 아울러 “한변”은 “올인모(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와 내일 30일(화) 오전 11시 30분 국회 앞에서 제12차 화요집회를 실시하여 국회의 북한인권법 제정촉구를 할 예정.

- 의견서 내용 요약 -

1. 유엔 안보리의 정식 안건 채택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14. 12. 22(현지 시각)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의 상황을 정식 논의 안건으로 처음 채택.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를 포함한 북한 지도부에 대한 국제사회 제재의 토대를 마련. 중국 등의 반대로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결의는 어려워도,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상황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북한에 상당한 압박.
- 2014. 12. 18. 유엔총회 결의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권고에 따라 북한의 인권침해는 반인도 범죄에 해당하고, 북한 상황을 ICC에 회부하도록 안보리에 권고하는 결의안을 압도적 표차로 채택. COI는 2014. 2. 17. 북한 정권은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최악의 전체주의 체제로서 반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므로 보

호책임(R2P) 원칙을 적용. 또한 북한의 반인도 범죄 책임성 확보를 위한 유엔 헌장기반조직 (field-based structure; FBS)의 설치를 권고하여 내년 3월 경 서울에 FBS가 설치될 예정.

2. 시급한 북한인권법 제정 필요성

- 기존 법률체계만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 주민들에 대해 구제조치를 취할 수 없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도 불가능. 평화통일은 북한의 민주화와 북한 인권의 개선증진을 전제로 하기 때문.
-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헌법에 버금가는 국제인권규범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2조 제2항은,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현행의 입법조치가 아직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들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조치(북한인권법)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고 규정.
- 북한인권법의 주된 내용은 COI 권고에 따라, ①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②북한 인권 개선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NGO)들에 대한 지원, ③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북한인권 개선정책의 추진을 위한 북한인권자문위원회 등 컨트롤 타워 설치임.
- 국회는 2005. 8. 11. 처음 북한인권법이 발의된 17대 국회부터 현재 19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10년을 방치. 국제사회가 R2P를 적용하여 FBS를 대한민국 서울에 설치하고 북한의 반인도 범죄 책임자에 대한 ICC 회부까지 준비하고 있는 마당에 개탄할 상태.
- 이제는 충남도의회(2011. 3. 28.), 속초시의회(2014. 10. 27.), 대구시의회(2014. 11. 26.), 울산시의회(2014. 12. 12.), 청주시의회(2014. 12. 19.), 부산시의회(2014. 12. 19.) 등 지방의회들에서 조차 국회의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

3. 더 이상 국회의 북한인권법 지체는 위헌

- ‘독일의 양심’ 디트리히 본 회퍼 목사는 ‘악(惡)에 침묵하는 것도 악’이라고 갈파. 반인도 범죄에 해당하는 참혹한 북한의 인권침해와 북한주민의 고통에 대한민국의 최고 입법기관인 국회의 장기간 침묵하는 것은 그 자체가 악임.
- 국회의 북한인권법 입법 부작위는 헌법 전문(평화적 통일의 사명), 제3조(영토), 제4조(평화통일정책), 제10조(기본권 보장), 국제인권규범(ICCPR) 제2조 등의 헌법규정 또는 헌법의 해석상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여야 할 작위의무를 위반하여 위헌. 북한 주민을 남한 주민과 차별하여 기본권 보장을 소홀히 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에도 위반.

2014년 12월 29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상임대표 김 태 훈